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제4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에 맞추어 개편 및 목표치를 수정·보완하고,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정부의 생활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일부 항목을 신설·보완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신설·보완(안 별표)
 - 현재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용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4차 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보완함

3. 추진일정

- 1) 제·개정안 확정 : ’20.10.21.
- 2) 관계부처협의 : ’20.10.22.~11.2.
- 3) 입법예고 : ’20.11.~12월
- 4) 규제심사 : ’20.11.~12월
- 5) 법제처 제출 : ’20.11월
- 6) 차관/국무회의 : ’20.12월

대통령령 제 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현행과 같음)		
[별표]			[별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부문	항목	목표치	부문	항목	목표치
1. 보건·복지	가. 진료 서비스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 과목에 대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1. 의료·복지	가. 진료	민간·공공의료기관을 통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중요 과목에 대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개선
	나.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나. 응급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다. 노인	재가노인(在家老人)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개선		다. 영유아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라. 영유아	영유아 보육시설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라. 노인	재가노인(在家老人)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개선
2. 교육	가. 초·중 학교	1) 지역 여건에 맞는 농어촌학교 육성 2)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2. 교육·문화	가. 학습	국공립도서관(작은 도서관 포함)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나. 평생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 설치·운영		나. 체육	체육관, 수영장, 간이운동장 등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3. 정주 생활 기반	가. 주택	「주택법」 제5조의3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제고		다. 초등 학교	1) 지역 여건에 맞는 농어촌학교 육성 2)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나.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제고		라. 평생 교육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 설치·운영 2)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 운영
	다. 난방	1) 읍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2)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등을 활용한 난방비 절감정책 우선 추진		마. 문화	1)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2)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관람·이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확충
	라. 대중 교통	1)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향상 2)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수요 대응형 준공공 교통프로그램 도입			

현 행			개 정 안		
		3) 도서지역의 경우 여객선 이용 가능성 제고			
	마. 광대역 통합망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제고			
4. 경제 활동· 일자리	가.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 육	1) 창업·취업 관련 지원센터 등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2)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 확충		가. 생활 편의	영농·생활 폐기물 처리 가능성 제고
				나 주택	1) 「주거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제고 2) 석면 슬레이트 소재 주택지붕 철거·개량률 제고
				다 상수도 라 하수도	상수도 보급률 제고 하수도 보급률 제고
5. 문화 여가	가.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1)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2)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관람·이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확충	3. 정주 여건	마. 난방	1) 읍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2)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등을 활용한 난방비 절감정책 우선 추진
6. 환경· 경관	가.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제고		바. 대중 교통	1)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향상 2)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수요 대응형 준공공 교통프로그램 도입 3) 도서지역의 경우 여객선 이용 가능성 제고
	가. 방법 설비	마을에 범죄 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율 제고		사. 방법 설비	마을에 범죄 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율 제고
7. 안전	나. 경찰 순찰	범죄 취약 지역에 마을별로 순찰 실시		아. 경찰 순찰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탄력순찰 실시
	다. 소방 출동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자. 소방 출동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 제고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4. 경제 활동	가.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 육	1) 창업·취업 관련 지원센터 등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2)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 확충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